

제 940 호  
1982.11.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편집 : 공 보 관 전 영 호  
 전 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 1705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배증개정 ..... 3  
 제 1706 호 :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배증개정 ..... 4

◎ 규 칙  
 제 2005 호 :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비시행규칙증개정 ..... 5

◎ 고 시  
 제 394 호 : 도시공원시설사용료변경결장고시 ..... 5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350

제 485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지적승인 .....	7
제 486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및 도로 ) 지적승인 .....	7
제 48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제 48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제 489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	10
제 490 호 : 육류견등가격고시 .....	10
제 491 호 : 비료생산업허가 .....	10
제 492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 .....	11
제 493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인가 .....	12
제 494 호 : 마포로제 1 구역 제 7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	13
제 495 호 : 1982 년도제 2 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	16
제 496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 지적승인가고시 .....	17
제 497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시행인가고시 .....	18
제 498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	18
제 500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운동장 ) 시행허가변경 .....	19
제 501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일부변경 .....	20
제 502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 공원 ) 지적승인 고사 .....	20

## 공 고

제 488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보 ) 완료공고 .....	21
제 489 호 : 서울특별시강서소방서회계관계공무원적인신조등록공고 ...	22
제 491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완료공고 .....	23
제 493 호 : 진관동가압장시설공사실시계획공람공고 .....	23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05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단서와 동조중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오염도 시험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보건연구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③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당해 보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④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세입제활용) ①역은 과잉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는 가족제외 사업비로 제활용하여야 한다.

②항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수당급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③제 2 조 제 4 항의 구장에 의하여 불입된 징수금중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징수한 수질오염도 시험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2년 12월 1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시장 김 성 배</p>	<p><b>◎서울특별시조례제 1706 호</b></p> <p>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 별표 2 )

오물수거수수료부과기준

구 분	종 별	등급	부 과 기 준	1월 부과금액	비 고
쓰레기	일반오물 (건물의 연면적)	1	165㎡이상 대 33㎡ 까지	250 원부과	○ '다량오물'이라함은 사업장의 연면적의 165 ㎡이상이거나, 쓰레기 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이상인 오물 ○ 쓰레기의 자가수거 의무자와 쓰레기처리 업자간의 대행수거요 율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에 한하여 쌍방향의 에 의하여 이 요율 의 30%범위내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다. ○ 청소요금중 오니수거 료는 요금의 2/3 조내청소료는 1/3로 계산
		2	165㎡ 미만	810 원	
		3	132 " "	670 "	
		4	99 " "	560 "	
		5	66 " "	450 "	
		6	49.5 " "	220 "	
	영업오물 (사업장의 연면적)	1	165 " "	3,800 "	
		2	99 " "	3,200 "	
		3	66 " "	2,300 "	
		4	49.5 " "	1,900 "	
		5	33 " "	1,300 "	
		6	16.5 " "	740 "	
	다량오물	1톤까지		3,600 "	
초과매 1톤까지		3,600 "			
분 노	18ℓ 당		130 "		
정 화 조	가 정 용	100인조미만 (법정 1인조당)		690 "	
	사 업 용	100인조이상 (법정 " )		700 "	

**규 칙**

서울특별시 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규칙제 2005 호**

서울특별시 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유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중 "연료시험소장"을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94 호**

도시공원시설사용료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내에 설치한 운동시설 및 운동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한다.

1982.12. 3

서울특별시장

도시공원시설사용료

종 별		구 분	금 액	비 고
운	수영장사용료	어른 1 회에 대하여	1,100	
		어린이 1 회에 대하여	700	
동	어린이수영장사용료	1 회에 대하여	160	
		장안평수영장사용료	어른 1 회에 대하여	900
시	정구장사용료	어린이 1 회에 대하여	480	
		정구장사용료	평일 : 편당 1 시간에 대하여	750
설		토, 일, 공휴일	1,300	

증	별	구	분	금	액	비	고
운 등 시 설	탁구장 사용료	단식 : 어른 30 분당		750			
			중 . 고 . 어린이 30 분당	520			
		복식 : 어른 30 분당		900			
			중 . 고 . 어린이 30 분당	700			
로라스케이트장 사용료	어른 1 시간 당		420				
	어린이 1 시간 당		320				
스케이트장 사용료	어른 1 회 입장 에 대하여		420				
	어린이 1		320				
보 트 장	2 인 승 30 분 당		1,100				
유 회 시 설	하늘차, 청용열차	어른 1 회 에 대 하여		380			
		어린이 1 회 에 대 하여		190			
	미니레일, 번개차, 두꺼비차, 비행기 밧데리카, 아폴로의자, 유리집	어른 1 회 에 대 하여		250			
		어린이 1 회 에 대 하여		150			
풍차놀이, 꼬마기차, 바츠카포, 빵이놀이, 회전목마, 회전껍, 회전그네, 달로켓트, 요술의집, 아기차 ( 어린이 )	어른 1 회 에 대 하여		150				
	어린이 1 회 에 대 하여		130				
유 모 차	1 회 1 시간 한 하여		500				
	1 시간 초과 시 마다		100				
조랑말승마	1 회 에 대 하여 ( 코스 1 회 전 )		550				
한 강 시 민 체 육 공 원	정 구 장	면 당 1 회 사 용 ( 1 회 는 1 시 간 이 내 )		270			
	축 구 장	면 당 1 회 사 용		2,750		단체 독점 사용 시 적 용	
	야 구 장	( 1 회 는 2 시 간 이 내 )					
	개 구 장			1,100			
	농 구 장						
배드민턴장				550			

**◎ 서울특별시고시제 485 호**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133 호 (73.8.10) 로 학교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 조,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의 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부천시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11.30.  
 서울특별시청

**변경결정및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학교 ( 유한학원 )	서울특별시구로구항동 1 - 7 일대 및 부천시 역곡동 61-6 일대	47.247 ㎡	
변경	"	"	49.453 ㎡	증) 2.206 ㎡

○ 별첨드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제 486 호**  
**도시계획시설 ( 학교및도로 )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 82.2.3 ) 및 제 313 호 (82.8.12 ) 로 결정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 학교 및 도로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 '81. 12.31 )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관계이해인에게 보인다.

1982.11.30.  
 서울특별시청

가.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sup>2</sup> (평)	비고
신설	학교	서대문연희동산 2-6 일대	13,686 (4140)	
"	"	" 산 2-6 일대	16,641 (5034)	
"	"	홍은동 186-3 "	14,027 (4243)	
"	"	" 202-7 "	11,544 (3492)	
"	"	봉원동산 3-8 "	13,871 (4196)	
"	"	홍은동산 26-125 "	11,861 (3588)	
"	"	연희동산 89-1 "	10,479 (3170)	
"	"	홍제동산 4-8 "	17,598 (5323)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류	6m	88m	서대문연희산 2-7	서대문연희산 2-8	
기점	소로	2류	8m	100m	서대문홍은산 11-148	" 홍은 202-5	
변경	소로	2류	8m	100m	" 홍은산 11-148	" 홍은 202-5	폐지
신설	중로	3류	12m	100m	" 홍은산 11-148	" 홍은 202-1	
신설	소로	2류	8m	185m	" 연희 128-15	" 연희 126-4	

**◎ 서울특별시고시제 48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11.30.

서울특별시강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영등포구여의도동 1-589 한신공영(주) 대표 이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강남구반포동 277 번지 4 호의 10 필지  
 나. 규모 : 아파트 12 층 1 동 178 세대다. 대지면적 : 10,543.46  
 라. 건축연면적 : 20,673.043

4. 사업시행기간 : 1982.11 - 1984.3.31.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가. 시설변경내역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변경사항	비	고	
기정	아류공원	영동1-3	주구40부락	1,000	폐지	어린이놀이터대체		
변경	"	"	"					
<p>◎ 서울특별시고시제 488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2.11.30.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종로구내수동 145 번지 삼용종합건설(주) 대표 김재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강남구대치동 65 번지 12 필지 나. 면적 : 24,416 다. 규모 : 아파트 14층 4동 3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2.12-83.12.31.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p> <p>가. 도로계획지조서</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거점	총장	비고
기정	소로	2	1	8	140	대치동 75-9	대치동 75-5	
변경	"	2	1	8	140	"	"	폐지
기정	"	2	2	8	130	" 63	" 65-1	
변경	"	2	2	8	130	"	"	폐지
기정	"	3	1	6	120	" 63	" 75-9	
변경	"	3	1	6		"	"	폐지

◎서울특별시고시제 48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3조 2항과 도시계획법제 24조 및 동법시행령제 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부천시청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2. .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구로구향동 1-7 일대 및 부천시역곡동 61-6 일대
-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유한학원시설확충(교사시설 신축)
- 다. 사업시행규모
  - 1) 시행면적: 49,453㎡
  - 2) 사업내역: 건축면적 - 572.04㎡
    - 연면적 - 3,946.36㎡
    - 동수및층수 - 1동: 지하 2층 지상 5층 및 옥탑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용도 - 교사시설(실습실등)
- 라.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유한학원

이사장 조 동 수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준공예정일: 1983.12.30.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별첨 (도면생략)
- 사. 사용할 토지: 별첨(생략)
-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유한학원
  - 별첨도면표시와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90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연동가격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제 49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12.1.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점육 600그램당) 2,200원
- 2. 시행일  
1982.12.1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 491호

비료생산업허가

비료관리법시행령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12.1.

서울특별시장

<p>1. 허가번호: 제 1-4 호</p> <p>2. 상 호: 제일제당주식회사</p> <p>3. 주 소: 서울강남구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79 동 606 호</p> <p>4. 성 명: 이 수 빈</p> <p>5. 상 표: 제일제당간결전용복비</p> <p>6. 제조장소재지: 서울강서구가양동 92</p> <p>7. 비료의종류: 제 3 중복합비료</p> <p>8. 보증성분중: 질소전량 10%, 가리전량 8%, 초산태질소 1.5% 규효성분량: 수용성붕소 0.3%, 유기물 10%</p> <p>9. 보증성분량중 유효성분의 최대량: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에 대하여 황청산 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셀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p>	<p>10. 기타규격: 우리 황산 0.5% 이하</p> <p>11. 생산능력: (년간) 45,000 톤</p> <p><b>◎서울특별시고시제 492 호</b></p> <p><b>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지적승인</b></p> <p>1. 건설부고시제 348 호 (82.9.24) 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제 13 조와 동법시행령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12. 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청</p>	
다 음		
1.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단위:㎡)		
구 분	위 치	면 적 (㎡)
주거-상업지역	마포구 성산동 360 번지일대	54,000
2. 도면별첨 (생략)		

<p><b>◎서울특별시고시제 493 호</b></p> <p>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인가</p> <p>1. 서울시고시제 50 호 (82.2.3) 로 도시 계획사업 ( 학교 ) 시설 결정 및 서울시 고시제 177 호 (82.4.30) 로 지적승인된 마포구 성산동산 23-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 동법시행령제 27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12. 1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b>사 입 계 요</b></p> <p>1. 사업시행지의위치: 서울시마포구성산동산 23-2번지의 5필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 계획인가</p> <p>3. 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12,481 ㎡                  나. 건축면적 : 1,215 ㎡건축율 9.46 %                  다. 연면적 : 4,482 ㎡, 용적율 34.9 %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스라브 ( 지상 4 층 )</p> <p>4. 사업시행 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 육위원회교육감</p> <p>5. 사업의착수 :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1984.12.31</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p>
---	---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구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주소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	성산동 31-3	대	1,127.0㎡	서울특별시		없 음
2	성산동 31-7	대	988 ㎡	"		"
3	성산동 31-8	임	1,458 ㎡	"		"
4	성산동 31-9	임	1,471 ㎡	"		"
5	성산동 31-1	대	139 ㎡	"		"
6	성산동산 23-2	임	7,658 ㎡	"		"

7. 토기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명명					
인원번호	소재지번호	지 목	지 적	소유자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관계인
1	성산동 31-3	대	1,127 ㎡	서울특별시	없
2	성산동 31-8	임	1,458 ㎡	•	•
3	성산동 31-9	임	1,471 ㎡	•	•
4	성산동 31-1	대	139 ㎡	•	•
5	성산동 31-7	대	988 ㎡	•	•
6	성산동산 23-2	임	7,658 ㎡	•	•

**◎서울특별시고시제 494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7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341 호 (81.9.23)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인 마포로제 1 구역제 7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내용중 정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하였기 동법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2. 11. 26

서울특별시청

정 관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제 5 조 (사무소의소재지)	전 화 33-9063	전 화 716-4081
제 6 조 (권리와의무)	조합원은 전조 및 본정관의 신고나 의무사항을 배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조합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합원은 전조 및 본정관의 신고나 의무사항을 배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조합원은 책임을 지다

구 분	당 초	변 경
제 11 조 (총회의구성)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원 및 참여조합원
제 13 조 (표결)	총회의 표결은 조합원 1인1표로 한다.	
제 14 조 (총회의의결사항)	10.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10.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과
제 16-제 20 조 대의원회	-	(신 설)
제 16 조 (구성)	-	1. 조합원은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 대행 3. 대의원수는 9인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
제 17 조 (소집)	-	1.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 2. 대의원회를 소집할때는 24시간전에 통지
제 18 조 (표결)	-	1. 대의원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대의원회는 위임 표결할수 없다.
제 19 조 (부의사항)	-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사항 2. 경비의 수지에산

구 분	당 초	변 경
		3. 제 32 조 이외에 조합원 이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 4. 부과금의 금액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법 43 조의 규정에 의한 보루지 등의 처분방법 6. 총회에서 의임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 조 (회의록)		의장은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2인이상의 대리원이 기명함으로써 조합에 비치한다.
제 23 조 (표 결)	2. 이사회 의 회의는 대리 위임표결을 할 수 없다.	2. 대리 (삭제)
제 24 조 (부의사항)	1. 사업계획수립 및 총회 의 부의집행	1. 부의사항
제 28 조 (직무)	1. 나.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다. (1) 조합장은 기존지주 및 관련 조합원의 행정 업무와 이에 수반된 사항을 담당한다. (2) 조합장은 별도 계약 체결된 투자회사의 건설분양 및 운영관리에 관계된 일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 (3) 감 사 가. 조합업무집행사항 및 재산사항에 대하	1. 나. 총회, 대리원회 다. 기존지주 및 관련 (삭제) 2) 조합장은 시공회사와 별도 계약 체결된 건설분양 및 운영관리 등

구 분	당 초	변 경
	여, 매년 삼, 하반기에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삼, 하반기에 (삭제)
제 29 조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인가년월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년
제 35 조 (차입금)		조합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제 45 조 (건축분양)	1. 토지소유자(지주조합원) 전원의 결의로서 별도 계약에 의거 지주조합원의 지분 건축물의 분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점유자 공공시설지역안의 토지소유자들 아파트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액물 기준하여 점포를 분양하거나 금전청산 한다.	1. 총회의 (토지소유자전원) 조합원의  도시재개발법 제 53 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495 호

1982년도제 2 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인은 1982년  
도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물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  
다.

1982. 12. 1.

서울특별시 장



회 계 명		예 산 액	
○ 일 반 회 계		663,580,429	
○ 특 별 회 계		668,259,980	
국민주택비특별회계		127,517,000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		21,500,000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67,157,000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6,453,000	
유로도로비특별회계		6,763,0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978,980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2,608,000	
수도사업비특별회계		133,231,000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286,842,000	
병원사업비특별회계		9,210,000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110,067,000	
○ 재해구호기금		2,100,000	

<p>◎ 서울특별시고시제 486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고시</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50 호 ( '82.2.3 )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p>	<p>의 권한의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12. 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변경	학 교	강남구방배 동산 81-9 일대	11,861(3,588)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류	6	140	강남구방배동산 81-10		강남구방배동 562-2		

◎ 서울특별시고시제 49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93 호( '77. 8.23 )로 지적승인된 당구 관내 대로 3류 제 39 호(동일로-북부 자동차사업소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2. 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하계동 193 의 9-184 의 1 번지 구간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도로 B=25 M, L=280 M, A=70 M
- 라.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착공 및 준공 예정일
  - 1) 착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와 동시

- 2) 준공예정일 : 1982.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기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의 권리명세(별첨)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9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공고제 44 호( '81.2. 19 )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된 강동구 상일동 267 번지 안흥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사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 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2. 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상일동 267 나. 사업의종류 및 경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안암전자공업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성동구구의동 248-87. 안규옥 라. 사업규모 및 면적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인원 등 의 명세서		지적 7,438 ㎡ 건축-기존 2,286 ㎡ 증축 1,344.8 ㎡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2. 12. 10. 1984. 6. 10.			
위	치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강동구상일동 267	대	대	7,438 ㎡	안규옥	없 음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강동구 구리의동 248-87 안규옥 아. 시행허가설계도서 : 생략		24 조, 동법 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제 379 호 ( '82.10.22 ) 권한위임에 의해 이를 편찬하고 고시한다.  1982. 12. 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00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운동장 ) 시행허가변경		1. 사업시행지 : 용산구 신사동 93-54 2. 사업종류 및 경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운동장조성 ) 3. 면 적 : 당초 - 8,827.5 ㎡ 감소 - 446 ㎡ 증가 - 619 ㎡ 변경 - 9,000.5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 호 ( '76.7. 15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 었으며 동고시 제 197 호 ( '81.5. 28 ) 로 도시계획사업 ( 운동장조성 )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p>4. 시학자주소 및 성명 종로구명륜동 4가 31번지 송실학원 이사장 김 상 식</p> <p>5. 사업착수 준공예정일 가. 허가일 1981. 5.28. 나. 준공예정일 당초 허가일로부터 3년</p> <p>6. 계획평면도 별첨 (도면생략)</p> <p>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숙,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 (생략)</p> <p>8.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생략)</p> <p>가. 변경사항</p>	<p><b>◎서울특별시고시제 501 호</b></p> <p>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일부변경</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246 호(82.7.2)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355 호 (82.8.30) 로 변경시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학교)세광전수학교가 폐교되고 혜성여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허가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제 6 조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서류는 도봉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12. 3 서울특별시장</p>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교 명	세광상업전수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사업시행자	세광상업전수학교장 김광철	학교법인혜성학원이사장 박정신
사업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도봉구하계동산16-38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640-8

<p><b>◎서울특별시고시제 502 호</b></p> <p>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 공원 ) 지적승인고시</p> <p>1. 건설부고시제 416 호 (80.12.6) 및 제 462 호 (80.12.31) 로 변경결정된</p>	<p>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제 6 조 1 항 1 호 마목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p>
--	---

경기도광명시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12. 4 서울특별시장
-------------------------------------	----------------------

가.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자연녹지 - 주거지역	경기도광명시하안동주공아파트부지	470,377
" "	" " 공단복지관부지	67,854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조서

구분	번호	공원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가정	변경	비고
변경	19	자연공원	도덕산공원	경기도광명시하안동	1,649,200	1,531,006	감 118,194
신설	근00-08	근린공원	철산공원	"		60,000	

\* 도덕산공원중 변경없는 부분은 도면생략(기지지도면참조)  
 다. 지적승인도면: 별첨(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8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2 호(82.3.17)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된 마포구 극동방송국-대흥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및 제 85 조, 건설부고시 제 521 호(81.12.31)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제도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1982.11.2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마포구 상도동 33-42 하수동 3-38 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극동방송국-대흥로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B=20m C=150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 착수: 82.6.17.
  - 준공: 82.10.23.

<p><b>◎서울특별시공고제 489 호</b></p> <p>서울특별시강서소방서회계관계공무원 직인신조등록공고</p> <p>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신설에 따 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p>	<p>원직인규칙제 7 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인규정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2.11.3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직인명 : 별첨 2. 사용개시일 : 82.12.1 3. 직인의인명 : 별첨</p>
--	--

공 인 의 인 명			
인 명			
공 인 명	강서소방서분임경리관인	강 서 소 방 서 분임물품관리관인	강서소방서물품출납원
인 명			
공 인 명	강서소방서분임지출원인	강 서 소 방 서 내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고제 49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3 호 ( 82.5.11 ) 로 시행허가되던 동고시 제 302 호 ( 82.8.4 ) 로 변경시행 허가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12. 2.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반포동 753 외 1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시행자

강남구반포동 753 학교법인일주학원 이사장 이 임 용

라. 사업기간

82.6 ~ 82.10.25

마. 사업의규모

○대지면적 - 42.012㎡

○금회사업시행면적 - 118.8㎡

바. 허가근거

서울특별시고시 제 193 호 ( 82.5.11 )

서울특별시고시 제 302 호 ( 82.8.4 )

사. 증공도면 : 별첨 ( 2필지 )

◎서울특별시공고제 493 호

진관동가압장시설공사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6 호 ( 82.11.24 ) 로 도시계획시설(수도)별정 및 동고시 제 493 호 ( 82.11.27 ) 호로 지정 승인된 은평구갈현동 391-5 외 1필지의 진관동·가압장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12. 3.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갈현동 391.5. 391-12 ( 2 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수도)시설 진관동 가압장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및면적 : 337.6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강남(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공예정일 : 사업실시제이시기부터

2)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70일이내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  
 인주소 성명 : 별첨(생략)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가.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  
 은 은평구청 수도공사파에 제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관동가압장부지토지조서

소재지	분할전 토지			분할후(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은평구 갈현동	391-5	대지	305.5㎡	391-5	대지	305.5㎡	갈현동 391-45	고순선의 1인	
·	391-42	대지	32.1㎡	391-42	대지	32.1㎡	·	·	
계			337.6㎡			337.6㎡			

사 령

◎ 1982년 12월 3일자

령제 219호

수원기전과  
지방토목기사보

이 상 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2년 12월 1일자

◎ 1982년 11월 30일자

령제 616호

소 방 본 부  
지방통신장(7등급)

이 유 종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령제 61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동규	용산구	증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과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복동 구본균	지하철운영사업소 지하철운영사업소	종합건설본부 ·	지방전기기사 지방건축기사
<p>◎1982년 12월 1일자      령제 619 호</p> <p>강서구      박종진 지방보건기사</p> <p>성북구보건소</p> <p>구로구보건소      정은철 지방보건기사</p> <p>강서구</p>		<p>환경녹지국장 이사관</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겸함.</p> <p>대통령 령제 623 호</p> <p>서대문병원      송문규 지방보건기사보 (X선)</p> <p>동부병원 과전근무를 겸함 (82.12.3 ~ 83.3.31)</p> <p>동부병원      정훈 지방보건기원보시보 (X선)</p> <p>서대문병원 과전근무를 겸함. (82.12.3 ~ 83.3.31)</p>	<p>령제 622 호</p> <p>도 제 2</p>
<p>◎1982년 12월 3일자      령제 621 호</p> <p>외전과      홍화표 지방행정서기</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동부병원 과전근무를 겸함 (82.12.3 ~ 83.3.31)</p>	
<p>◎1982년 12월 4일자      령제 625 호</p>			
성명	발령부서	호봉	직급
이자경	서대문병원	1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영양사)
이해배	아동상담소	1호봉	· 8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한재숙	시정개발담당관	1호봉	· 8급상당 (해외자료조사원)

령제 62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홍렬	내무국총무과근무를 겸함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과전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 1982년 12월 6일자			
령제 628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성우	주택개발과 (특정건축물양성 화전담요원) 과전근무를명함 (82.12.6 ~ 83. 4. 7)	동대문구 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
이보충	"	구로구독산 2 동	주사보
이희원	운수 2 과 (위반차량단속요원) 과전근무를 명함 (82.12.6 ~ 83. 6. 5)	종로구이화동	서기
유정곤	"	중구을지로 3. 4. 5 가	"
이종선	"	용산구서빙고동	"
박영호	"	성동구도선동	"
최기열	"	성북구안암동	"
김명섭	"	서대문구충정로동	"
유승택	"	마포구성산 1 동	"
서철환	"	구로구가리봉 2 동	"
◎ 1982년 12월 7일자		령제 629 호	령제 630 호
동력자원부 토목기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겸함.		윤석우  진라북도 지방토목기과	이선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종합기술시험연구소

1982년 12월 6일자

령제 631 호

기관명	직무대리자			도
	직위	작경	성명	
도봉구	총무국장	서기관	김조권	
마포구	·	·	김영준	
강남구	·	·	김영근	

령제 532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발령일자
박종우	내무국장	마포구청장	부이사관	82.12.6
강병수	산업경제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사관	·
김진호	환경녹지국장	강남구청장	부이사관	·
변외정	내무국	산업경제국장	이사관	·
신성호	·	도봉구청장	부이사관	·
신현석	·	구로구청장	·	·
김영만	도봉구청장	내무국	이사관	82.12.20
김영중	은평구청장 (부이사관)	투자관리과	지방부이사관	82.12.6
김원오	마포구청장	내무국	부이사관	82.12.20
허재구	구로구청장	은평구청장	·	82.12.6
백상승	강남구청장	내무국	·	82.12.20
박순철	공무원교육원장	사무국장	이사관	82.12.6

대 통 령